

1. 의결주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계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2016-475호)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던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임무, 위원 수,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기본적 사항은 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20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원장의 임무, 회의개최, 위원 해임·해촉 및 재심의 등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업무 위탁기관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안 제12조의3 신설)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3) 위원장은 회의 소집 전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위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나. “건설기계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 위원 해촉 등(안 제12조의4 신설)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해촉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6)을 준용하여 해임하거나 해촉 하도록 함

다.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안 제12조의5 신설)

-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공정한 직무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당사자·위원은 각각 제척·기피신청을 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함
- 2)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관련 심의를 중지하도록 함

라.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안 제12조의6 신설)

- 1) 당사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재심의를 하는 경우 당초 심의·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마. 위원회의 업무 위탁(안 제12조의7 신설)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건설기계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이하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조사의 결과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공익신고자(이해관계자·공익신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사안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안이 발생한 건설기계 제작자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안이 발생한 건설기계 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관련 심의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조사의 결과 등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당초의 심의·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5항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8, 제12조의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u>제12조의3(건설기계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u> ① <u>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이하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u> 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③ <u>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④ <u>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u>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u>

	<u>및 조사의 결과 등에 대해 심의 · 의결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 공익신고자(이해관계자 · 공익신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⑥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⑦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설></u>	<u>제12조의4(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신설></u>	<u>제12조의5(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u>①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의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 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 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 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 이나 감정을 한 경우</u> <u>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의 대 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u> <u>5. 위원이 해당사안의 원인이 된 처 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u> <u>6. 위원이 해당 사안이 발생한 건설 기계 제작자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경우</u> <u>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 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u>
--------------------------	--

	8. <u>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안이 발생한 건설기계 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u> ② <u>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u> ③ <u>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u> ④ <u>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사안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u> ⑤ <u>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관련심의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12조의6(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u> ① <u>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법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u>

	<u>및 조사의 결과 등에 대한 심의 · 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u> <u>1.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u> <u>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가 당초의 심의 · 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12조의7(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5항에 따라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u>

<u>제12조의3</u> ~ <u>제12조의4</u> (생략)	<u>제12조의8</u> ~ <u>제12조의9</u> (현행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4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44